

동성애 의무교육 지원법

# 인권교육지원법의 문제점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 Part I

## [인권교육지원법]의 내용

# 발의 법안에서 인권교육의 정의

## 인권교육이란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력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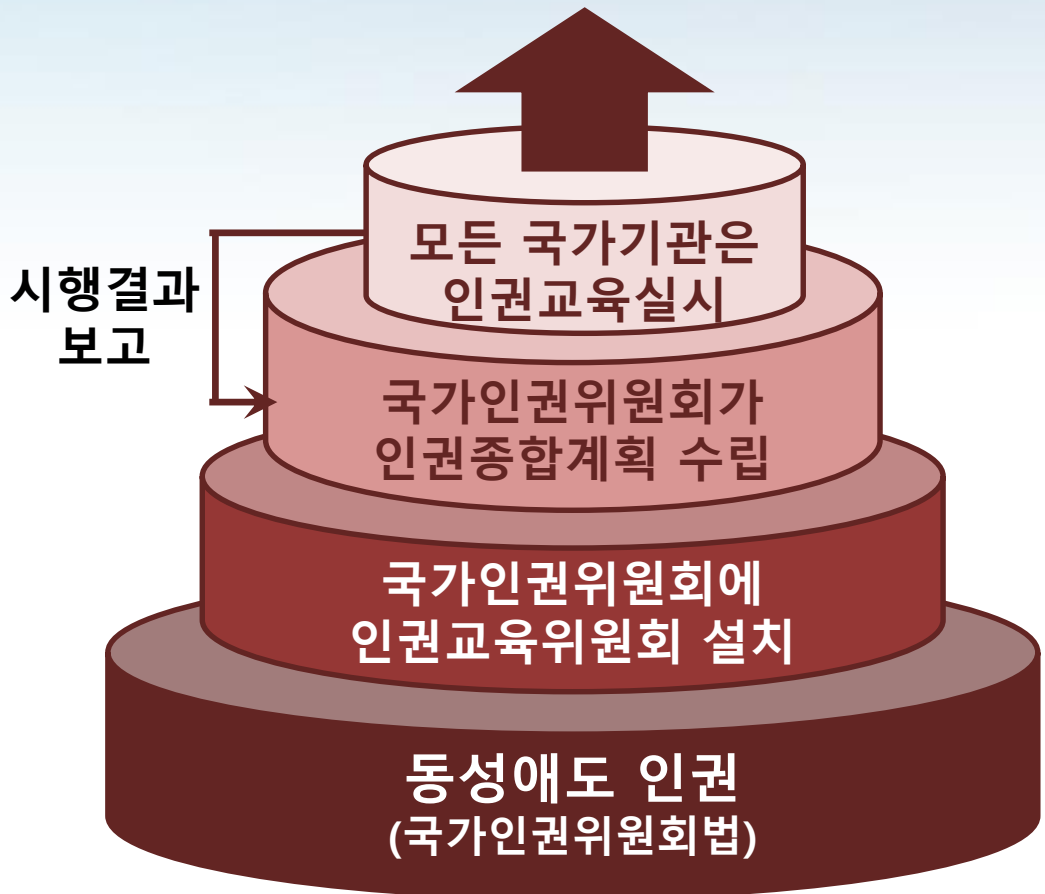
## 국가인권위법 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성애(성적지향)를 반대하면 차별행위로서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 인권교육지원법안의 구조

인권교육지원법은  
동성애 의무교육지원법



인권교육이란 !!  
모든 교육이 인권교육과 연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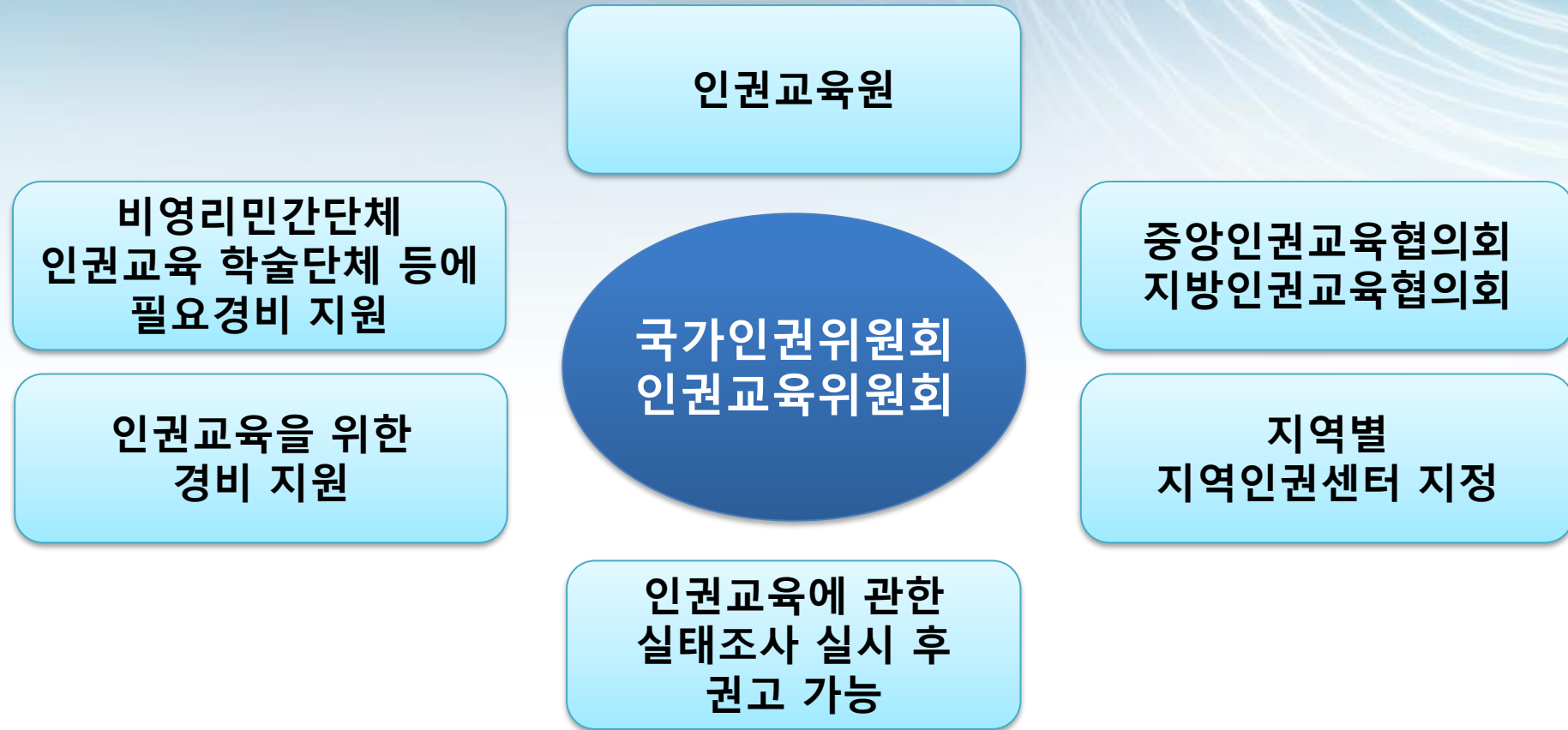
별도로 인권교육을 지칭하는 이유는  
기존 교육으로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동성애를 반대해서는 안된다!!

## 인권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1)

- **국가기관 등에서 인권교육의 의무적 실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구금 및 보호시설,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국가기관 등에서 인권교육의 의무적인 실시
- **인권교육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반영, 모든 군인에게 인권교육 실시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반영, 모든 군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인권교육 실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기관에 인권교육 시행 권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매 5년마다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는 매5년마다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인권교육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 설치**  
인권종합계획 수립, 인권교육원 운영, 지역인권교육센터 지정 등

## 인권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2)



인권교육의 기획, 기관 설립, 지원, 평가 등의 모든 일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체가 됨

##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

성적지향(동성애) 반대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7번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2017년 성적지향(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헌법 개정안 제안**

동성애 옹호법안 제정시도	2004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 (이후 총 7차례 입법 시도)
	2010년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지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권고
	2016년	대학원생 인권장전 (동성애 차별금지) 제정 권고
	2017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헌법 개정 제안
청소년 동성애 옹호조장	2002년	국어사전 내용 수정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 삭제 권고)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단 사유에서 삭제
	2005년	인권상황실태 연구보고서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를 정상인 것처럼 교육할 것 권고)
	2009년	동성애 옹호 교과서 집필 기준 권고 (교과서 모니터링단 구성)
동성애 옹호 여론조성	2006년	2006년 이후 동성애 옹호 영화 제작 및 지원
	2011년	인권보도준칙 제정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 인과관계 기사 금지)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취임사



###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여성,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혐오와 배제 문제에 대응하고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2018. 9. 5



## 성적지향 차별금지 헌법개정 시도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 제11조에 ~ '**인종과 언어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위법에 포함된 차별금지 항목(성적지향 포함)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도록 함 (2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현행 11조 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 언어, 장애**'를 추가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그 외에 '**지역, 성적 지향, 고용형태**'를 추가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 (3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보고내용** (6월 19일 회의)

### 제1소위원회의 개헌특위 전체회의 보고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제점

-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거나 차별금지사유 끝에 **‘등’**이 추가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가 인용되지 않아야 함.
- 성평등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 다양한 성정체성 간의 평등이 포함되어 있어 **‘양성평등’**이 **삭제**되고 **‘성평등’** 항목이 **신설**되면 **동성애 합법화**

## 국민대토론회에 대한 국회개헌특위의 평가

### 국민들은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

현행 헌법 규정인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습니다. (제16차, 17차 회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 침해 차별 사유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을 명시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위 권고를 통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여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제16차 회의)

매 토론회마다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질의한 내용으로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 추가 및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 또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망명권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7차 회의)

## 정부의 헌법개정안 발의 (2018. 3. 22)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정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는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이 포함되지  
않았고, 성평등이 포함되지 않았음

**성적지향(동성애)는 옹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뜻**

## 인권교육지원법은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



인권교육지원법은  
유승민 의원이 2014년에 발의하였다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스스로 철회한 법안임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76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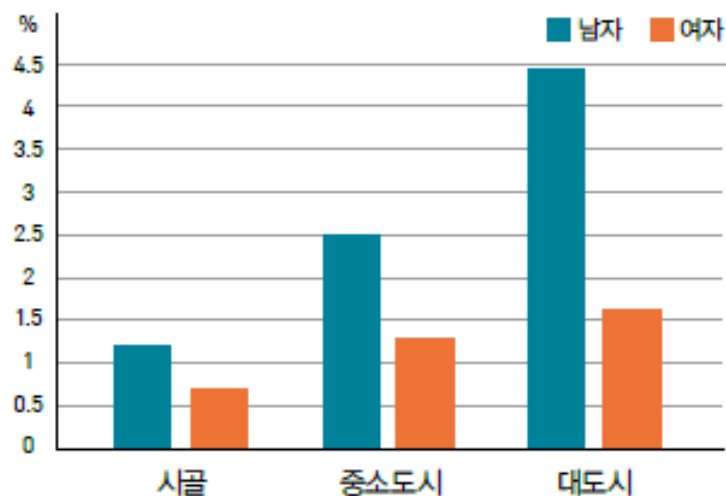
동일한 내용의 인권교육지원법을 또 다시 발의한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임

# Part II 동성애에 관한 F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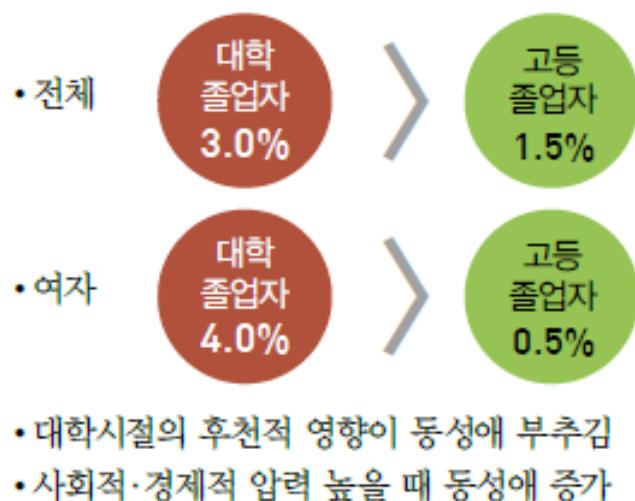
##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 ① 해머가 사이언스에 발표한 유전자군 Xq28은 동성애와 관련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 ② 남성 동성애가 두뇌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리베이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③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후천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청소년기를 보낸 장소와 동성애 빈도 비교〉



〈미국 동성애자의 특징〉



동성애의 형성에는 자라온 생활 및 환경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200개 이상의 논문을 검토한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팀의 결론

**The New Atlantis, Special report, 2016. 10.**

"Sexuality, and Gender (Findings from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ciences)",  
<https://www.thenewatlantis.com/publications/executive-summary-sexuality-and-gender>

## Sexuality and Gender

Findings from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ciences

성적 취향은 타고난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속성으로 고정됐다는 관념, 성적 정체성은 타고난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고정됐다는 관념 등의 과학적 증거는 없다.

동성애나 성전환자 인구는 일반인들에 비해 정신병(불안, 우울증, 자살 등)과 사회적 문제(폭력, 약물 남용 등)를 많이 경험한다.



## 동성애 옹호는 선천적이라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



진선미 여가부장관 지명자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 반대는 인종 차별이다!**

**동성애자는 왼손잡이 같은 소수자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지명자

##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입니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대법원 판결 2008도2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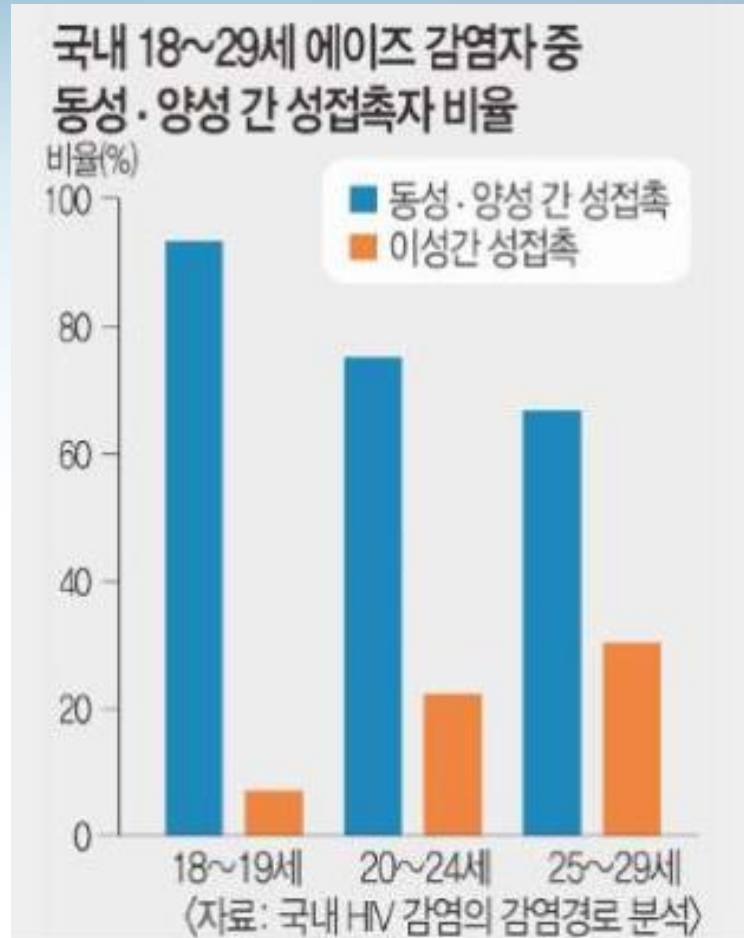
동성 혹은 이성을 좋아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는 절제가 없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절제되지 못한 성적욕망입니다.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인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나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남성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입니다!!

### 동성애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 생존하는 에이즈 환자의 92.7%가 남자이며, 에이즈는 99%가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므로,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 확산 경로입니다.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5.12)
- 산모 및 성 매매 여성은 의무적으로 에이즈 감염 검사를 하고 있고 남성은 거의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동성간 성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가장 흔한 경로임을 나타냅니다. (질병관리본부 보고서, 2014, 이훈재)
- 세계는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에이즈 감염이 폭증하고 있으며, 매년 400명의 청소년과 청년이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매년 세 월호 1척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 에이즈 감염자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역학조사결과**가 국내 최초로 나왔다.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국 19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18세 이상 에이즈 감염자 1474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결과 발표 (김준명 연세대 감염내과 교수)

코호트 연구란 일본과 전국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에이즈 감염자 추적조사를 뜻한다. 에이즈 감염자가 대학병원에서 에이즈 치료와 약 처방을 받으려면 주치의와 상담 후 전문 상담 간호사가 제시하는 표준화된 코호트 설문지에 정확한 감염 경로를 체크해야 한다.

# 미국, 일본, 유럽의 질병관리본부는 **남성간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임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음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s://www.cdc.gov/std/life-stagespopulations/msm.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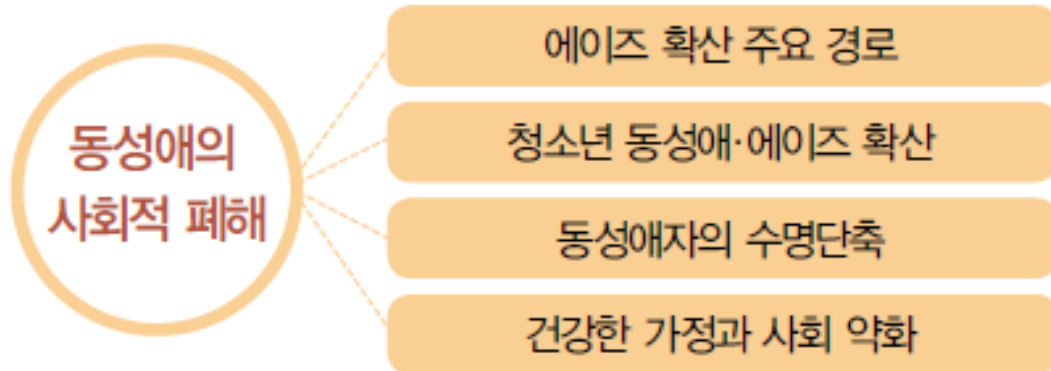
일본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nih.go.jp/niid/ja/diseases/alphabet/aids.html>

유럽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s://ecdc.europa.eu/en/publications-data/hiv-aids-eu-and-eea>

# Part III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 동성애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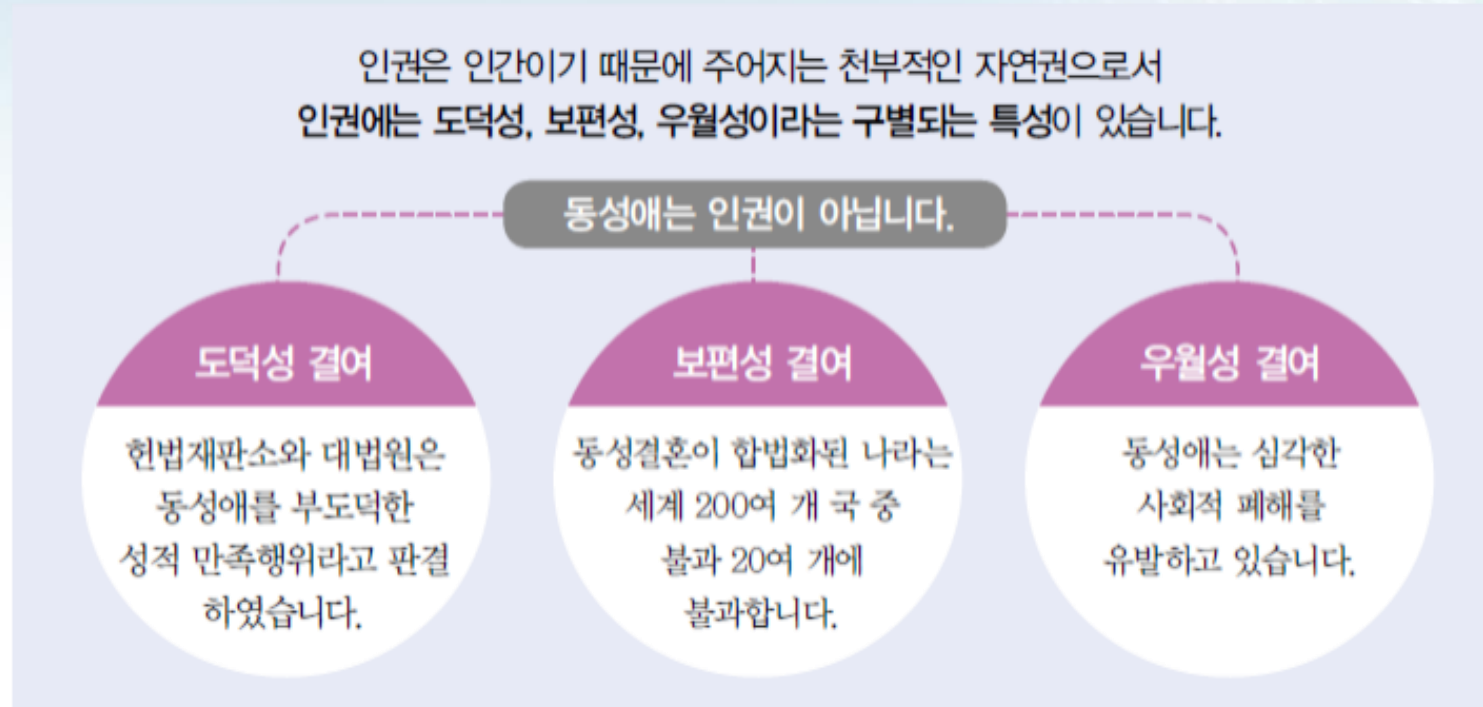
동성애자(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행위)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4번의 재판을 통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결된 것처럼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는 절제되지 못한 성적욕망으로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입니다.

# 부도덕한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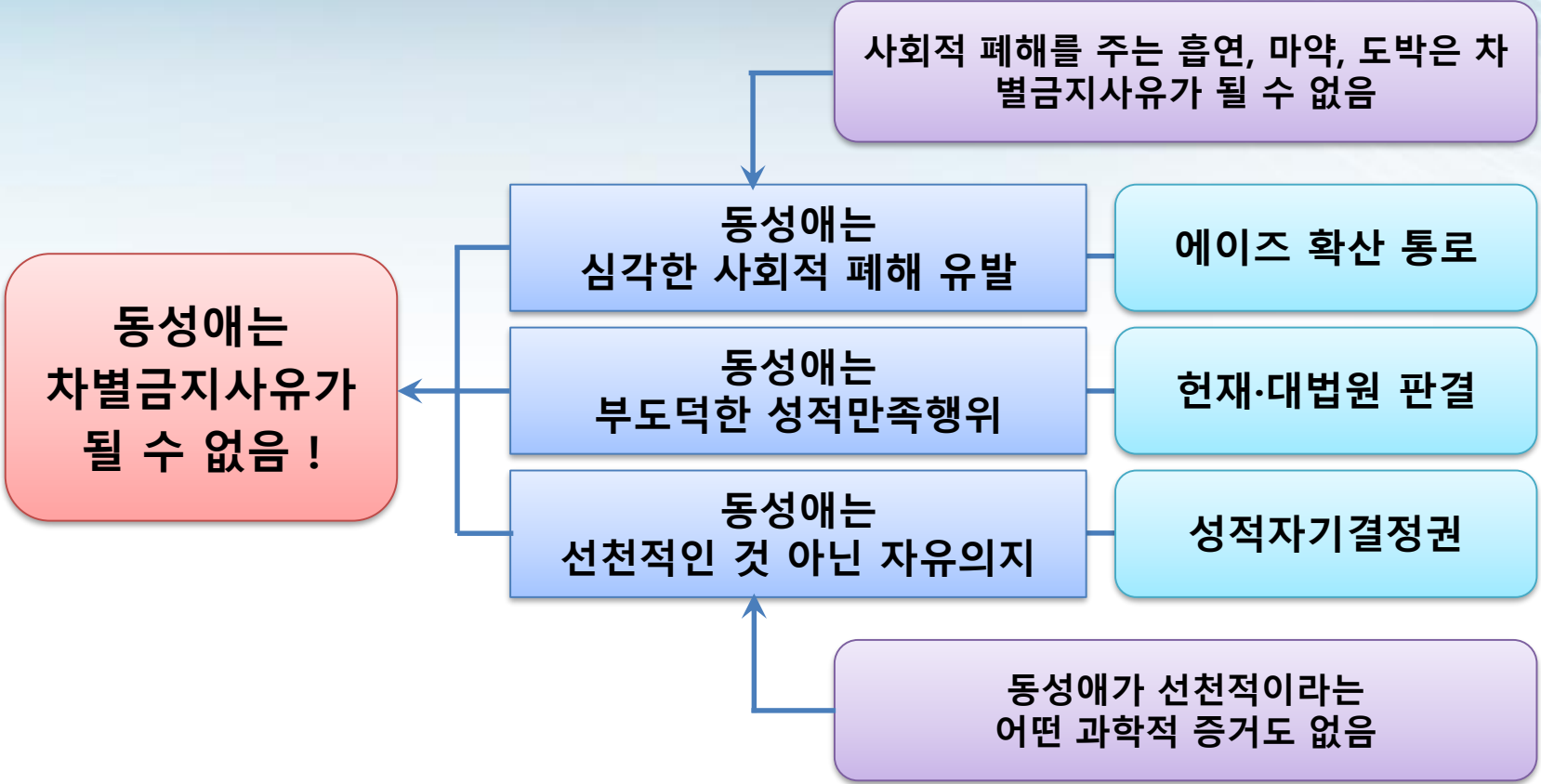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도덕성입니다.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사람)들의 인권은 침해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행위)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 동성애는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부당한) 차별이란 합리적 사유가 없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차별에는 **정당한 차별**과 **부당한 차별**이 있습니다.

## 정당한 차별

- 사회적 피해를 주는 흡연, 마약, 도박 등을 제한하는 것과 성적이 좋지 못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차별**입니다.
- 현행 헌법이 **근친혼(가까운 친척과의 결혼)**과 **중혼(여러 명과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차별**입니다.

## 부당한 차별

- 불가항력적 사유(성별, 장애, 나이 등)로 인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혐오**라고 합니다.
- 사회적 신분(비정규직 등), 종교 등에 따른 불리한 대우는 **부당한 차별**입니다.

##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혐오가 아닙니다!!

성별, 피부, 장애, 나이, 국적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흑인, 유대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소수자를 핍박하는 것을 혐오라 합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종교 등에 따라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차별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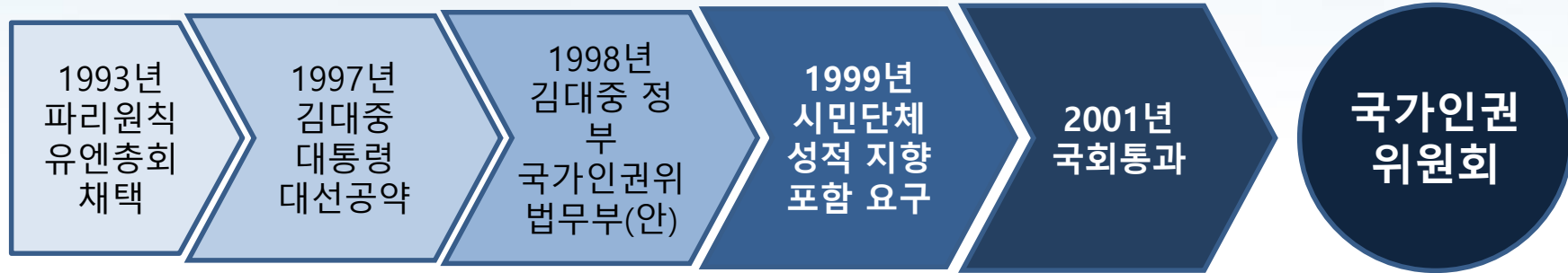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율적 의지에 의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나 혐오가 아닙니다!!

# Part IV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

#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포함 되었습니다!!

##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성적 지향(동성애)이 국가인권위원회 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됨

3년간 인권위 독립성과 권한에 대해서 주된 논의



파리원칙에는 '성적 지향' 없음

법무부(안)에는 '성적 지향' 없음

성적 지향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전혀 없었음

국회회의록 16대 220회 7차 법제사법위원회  
국회회의록 16대 220회 11차 국회본회의

##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 지향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조장 활동



2001년에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을 옹호 조장하기 위하여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성애 옹호법안 제정시도	2004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 (이후 총 7차례 입법 시도)
	2010년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지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권고
	2016년	대학원생 인권장전 (동성애 차별금지) 제정 권고
	2017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헌법 개정 제안
청소년 동성애 옹호조장	2002년	국어사전 내용 수정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 삭제 권고)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단 사유에서 삭제
	2005년	인권상황실태 연구보고서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를 정상인 것처럼 교육할 것 권고)
	2009년	동성애 옹호 교과서 집필 기준 권고 (교과서 모니터링단 구성)
동성애 옹호 여론조성	2006년	2006년 이후 동성애 옹호 영화 제작 및 지원
	2011년	인권보도준칙 제정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 인과관계 기사 금지)

#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이후의 사회적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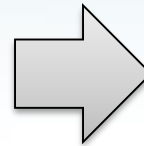
## 국가인권위 주요 활동

사전(辭典) 내용 변경  
동성애 영화 제작 배포

인권보도준칙  
동성애 부정보도 금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기준 변경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 심각한 사회적 피해

에이즈 감염 폭증 (3.3배)  
에이즈 확산위험국가

청소년  
에이즈 감염 폭증 (6배)

청소년 동성결혼 지지  
20대 66% 지지, 50대 70% 반대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시도

## 인권이란 이름으로 법 위에 있는 인권 센터

전북 학생인권센터는 혐의가 없어 수사기관이 종결한 사건을  
강압 조사하여 전북 부안의 한 교사를 자살로 몰고 감

#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속 입법 활동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한  
후속 권고



지방 인권조례 권고  
대학원생 인권장전 권고

지역 인권 센터  
대학 인권 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정주도 시민단체



학생 인권조례 제정

학생 인권 센터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과 국민을 반대하는 국가인권위 활동**

국민들의 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후 6번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였고,  
동성애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활동을 지속해 옴



# Part IV

## [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반대

# [양성평등] 삭제, [성평등] 신설에 대한 국민적 반대 (1)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결성 (2017. 7. 27)  
300여개 단체 연합 창립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 등)



전국교수연합 반대 성명서 (2017. 8. 10)  
323개 대학 3,131명 교수 서명 (2017년 10월 6일 현재)



국회 앞 단식 농성 집회 (2017. 8.10~17)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대회 (2017. 8. 16)

## [양성평등] 삭제, [성평등] 신설에 대한 국민적 반대 (2)



**동성애·동성결혼 개헌 반대 부산국민대회**

일시: 2017. 8. 29일(화) 오후 2시 / 부산 시청앞 3천명(경찰추산) 반대집회



**동성혼 합법화개헌 반대 광주국민대회 (2만명 참가 - 경찰추산)**

일시: 2017. 9. 3일(일) 오후 4시 / 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18민주광장 앞)  
주최: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동성애·동성결혼개헌반대국민연대 외 42개 시민단체



**동성애·동성결혼 개헌 반대 대전 국민대회**

일시: 2017. 9. 17(일) 오후 3시 / 장소: 대전광역시 갤러리아 앞  
주최: 바른개헌국민연합 외 범종교 시민단체 / 3만명 참가(경찰추산)



**천안시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개헌 반대 국민대회**

일시: 2017. 10. 22(일) 오후 3시 / 장소: 천안종합터미널 앞  
주최: 건강한나라세우기시민운동본부외 시민단체들

# [양성평등] 삭제, [성평등] 신설에 대한 국민적 반대 (3)



# [양성평등] 삭제, [성평등] 신설에 대한 국민적 반대 (4)



아산시민 5천명, 동성애·동성혼 반대 시민대회 개최 (2017. 9. 24)  
장소 :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학술 포럼  
일시: 2017. 7. 27(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 주관: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학술 포럼  
일시: 2017. 8. 24(목) 오후 3시 /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주최: 조배숙 국회의원실, 결혼과가정을세우는연구모임 / 후원: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반대

## [양성평등] 삭제, [성평등] 신설에 대한 국민적 반대 (5)

###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반대 서명지 제출 기자회견



- 일반인 : 711,922명 (11월 21일)
- 교수 : 328개 대학 3,207명 (11월 24일)
- 성교육 표준안 : 일반인 91,826 명 (10월 30일)
- 교사 643명 (2017년 10월 30일) - 성교육
- 법조인 : 348명
- 의료인 : 150명 (2017년 10월 30일)
- 일반교사 : 278명 (2017년 10월 30일)

#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 반대 (2017년 12월 14일)



##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 결사 반대 국민대회 (2017년 12월 18일)





##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국민여론

많은 국민들은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결혼도 합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에  
80여만명이 서명하였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2017. 9)

■ 반대 ■ 찬성 ■ 모름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63.1%

매우반대 46.1%, 약간반대 17%

찬성 34.4%

매우찬성 8.7%, 약간찬성 25.7%



**감 사 합 니 다.**

---